

『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「구미시 건축 조례」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,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가설건축물 농막에 관한 사항 단서 삭제(안 제22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농지법 시행규칙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1. 3. ~ 1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「구미시 건축 조례」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에 농막¹⁾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‘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²⁾ 대상이 아닐 것’이라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-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등 타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농막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 시·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었던 부분을 일부 완화하여 무분별한 불법 농막의 양산을 줄이고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.

1)농막 :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(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,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.(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)

2)토지의 형질변경 : 절토(땅깎기)·성토(흙쌓기)·정지(땅고르기)·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)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)